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581
----------	-------

발의연월일 : 2025. 10. 14.

발 의 자 : 신장식 · 김준형 · 강경숙
서왕진 · 황운하 · 김선민
이해민 · 박은정 · 김재원
차규근 · 정춘생 · 정혜경
김남근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모펀드에 대하여 펀드설정, 판매, 자산운용, 집합투자기구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공모펀드에 비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한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사모펀드의 특유한 운용방식으로서 높은 레버리지를 통해 기업을 인수하여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피인수기업의 자산이 쉽게 유출되고 소수주주와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모펀드의 차입비율 규제를 강화하고 피인수기업의 자산유출 방지 및 이해상충 방지 규정을 도입하여 차입을 통한 기업인수·경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금액 상한을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400에서 100분의 200으로 하향함(안 제249조의7제1항).
- 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한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2년간 그 다른 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 이익의 배당 또는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안 제249조의7제7항 신설).
- 다. 일반 사모집합투자재산으로 인수하여 실질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다른 회사의 차입금액 상한에 대해서도 그 다른 회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 이내로 제한함(안 제249조의7제8항 신설).
- 라.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와 투자대상기업 간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업무집행사원은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와 투자대상기업의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그 거래 사실과 이해상충 여부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49조의16제5항 및 제6항 신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100분의 400”을 각각 “100분의 200”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7항) 중 “제6항까지”를 “제8항까지”로 한다.

⑦ 「상법」 제341조, 제462조 및 제4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과 관련하여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간 그 다른 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 이익의 배당 또는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⑧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다른 회사에 대한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공동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회사의 계산으로 차입한 금액

의 총액이 그 다른 회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투자
2.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제249조의16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업무집행사원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해당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를 포함한다)가 투자대상기업(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이하 이 조에서 “내부거래”라 한다)를 하는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와 투자대상기업의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2.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4.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⑥ 업무집행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그 거래 사실과 이해상충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9조의18제2항제4호 중 “투자대상기업(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투자대상기업”으로 한다.

별표 1의 제260호의8부터 제260호의16까지를 각각 제260호의9부터 제260호의17까지로 하고, 제260호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0의8. 제249조의7제8항을 위반하여 비율을 초과하도록 한 경우
별표 6에 제15호의9 및 제15호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9. 제249조의16제5항을 위반하여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15의10. 제249조의16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제249조의7제1항·8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249조의7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1. ~ 4. (생략)

② ~ ④ (생략)

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다른 회사(투자목적회사,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공동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5년이 되는 날까지 그 지분증권을 제삼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1.·2. (생략)

⑥ (생략)

<신설>

-----.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1.·2.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상법」 제341조, 제462조

<신 설>

및 제4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재산에 속하는 주식과 관련하
여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간
그 다른 회사의 자기주식의 취
득, 이익의 배당 또는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
을 행사할 수 없다.

⑧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다른 회사에 대한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
선 등을 위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일
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공동
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다른 회사의 계산으로 차
입한 금액의 총액이 그 다른
회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
을 뺀 금액의 100분의 200 이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도록 하여서는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과 보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9조의16(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① ~ ④ (생략) <신설>	<u>아니 된다. 다만,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1.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투자</u> <u>2.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u> ⑨ -----제8항까지----- ----- ----- ----- ----- -----. 제249조의16(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업무집행사원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기관전용</u>
--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해당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를 포함한다)가 투자대상기업(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
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이하 이 조에서 “내부거래”라 한다)를 하는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와 투자대상기업의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2.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

<u>투자목적회사가 제249조의7제 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 으로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u>	
5. (생략) ③·④ (생략)	5.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